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6고단791 저작권법위반
피 고 인 1. A
2. B
검 사 김낙원(기소), 이정원(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정향 담당변호사 권홍철 (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6. 8. 13.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대학교 D과 및 E대학교 F과 겸임교수이고, 피고인 B는 공학박사로서 이들은 대학 선후배 관계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저작권재산권 등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20. 12.경 피고인 B에게 G대학교 D과 교수인 H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발행처 'I', 'J 저', 제목 'K' 책(ISBN L) 및 M' 강의교안을 건네주면서 E대학교에서 강의 교재로 쓸 책을 집필하라고 지시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B는 저작권자인 H의 허락 없이 'K'의 437~605쪽 기재 실험부분의 실습순서, 표의 구성, 일부 이론 부분 등을 동일하게 표절하고, 위 강의교안의 총 17개 PPT 파일과 886쪽 중 실험관련 이미지물의 72개를 그대로 캡처 또는 일부 수정하여 동일하게 표절하였다.

피고인 B는 위 책의 매 챕터가 완성될 때마다 피고인 A에게 이메일로 집필중인 책을 전송하여 책의 내용, 구성 등에 관한 피드백을 받았으므로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작성중인 책이 자신이 건네준 H의 'K' 책 또는 강의교안과 동일, 유사한 사실을 잘 알았거나,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계속해서 피고인 A는 2021. 3.경 파주시 N 소재 'O' 출판사에 출판의뢰를 하여 2021. 4. 8.경 출판사로부터 1차 교정본을 받아 피고인 B를 통해 오타 수정 등을 하게 한 후 같은 해 5. 27.까지 총 4회에 걸쳐 출판사 측과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교정을 한 다음, 같은 해 7. 5. 도서명 'P', 'Q, R 공저', 발행처 'O'(ISBN S)를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저작권자인 H의 저작재산권을 복제, 배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저작권법위반

누구든지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 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경 파주시 N에 있는 'O'에서 제1항과 같이



H 교수의 원저작물을 표절한 도서인 'P'을 발행하면서 실 저작자가 아닌 Q, R을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녹취록
1. 고소인 제출[도서(K) 표절부분 비교]
1. 고소인 제출[강의교안 표절부분 비교]
1. 고소인 제출[강의교안(M, 886page #1/2), 고소인 제출[강의교안(M, 886page #2/2)]
1. 강의교안(M) 제작용 파일
1. 강의교안(M)을 이용한 동영상 강의
1. 고소인 제출 P
1. 고소인 제출 K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저작권재산권 침해 행위 즉, 표절을 지시하거나 표절을 공모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된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며,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도17045 판결 참조).

이 사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표절 행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지는 않았더라도, 피고인들이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저작권자 H의 원저작물을 복제하고 일부 수정·편집한 2차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를 배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 A는 2020. 12.경 피고인 B에게 P 강의교재의 집필을 지시하면서, H가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I 발행 'K' 교재(이하 '원저작물 교재'라고 한다)와 H가 작성한 강의교안 PPT(이하 '원저작물 강의교안'이라고 한다) 등을 참고자료로 제공하였다.

② 피고인 A는 2020. 2.경 H로부터 강의계획서와 원저작물 강의교안 파일을 교부받아 이를 강의에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2020. 8.경 E대학교에서 원저작물 교재를 이



용하여 강의를 하게 되면서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위 원저작물 강의교안 파일을 배포하였는데, 2020. 12.경 H로부터 '교재를 강의에 사용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강의교안 학생들에게 무료로 배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의 항의를 받고 그 파일을 삭제한 바 있었다.

③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2학기에 걸쳐 H의 원저작물 교재와 원저작물 강의교안을 사용하여 강의를 하였으므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음이 명백하다. 피고인 B는 강의교재 한 챕터가 완성될 때마다 피고인 A에게 이메일로 초고를 보냈고, 피고인 A로부터 내용 및 구성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다. 그렇다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작성한 강의교재 초고의 실습 부분 내용이 H의 원저작물과 유사하거나 동일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출판 전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드백을 주고받는 동안 표절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할 기회도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이메일, 대화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가이드라인이나 지도·감독·검수 없이 막연히 주의를 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주된 저자인 피고인 A가 표절 방지를 위하여 충분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피고인 B가 독단으로 표절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④ 원저작물 교재와 원저작물 강의교안은 H가 수년에 걸쳐 작성하고 강의에 활용하여 온 자료로서, 특히 강의교안에 사용된 회로 그림은 H가 VISIO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직접 작성한 것이므로, 이를 복제하지 않고 직접 창작하기 위하여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편집비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인데, 이는 290쪽에 이르는 강의교재를 직접 창작하고 회로 그림 등을 작성하



는 대가로 보기에 지나치게 적다. 결국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기존의 교재와 강의 교안 등 타인의 저작물을 '짜집기' 수준으로 복제 및 편집을 하는 방법으로 강의교재를 작성할 것임을 업무 지시 당시부터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⑤ 피고인 A는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연구자로서 연구윤리와 저작권법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 B에게 H의 원저작물 교재와 강의교안을 참고자료로 직접 제공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이를 그대로 복제하지 않았는지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검수하여야 함에도, 표절 방지를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구 저작권법(2021. 5. 18. 법률 제18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저작재산권 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저작권법(2026. 2. 10. 법률 제213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7호 제1항 제1호(저작자 아닌 자 명의 저작물 공표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구 저작권법(2021. 5. 18. 법률 제18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저작재산권 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¹⁾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공소장에는 피고인 B에 대한 적용법조에 경합범가중 규정인 '형법 제37조, 제38조'가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B의 저작권법위반 행위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저작권자 H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강의교재를 작성하여 출판하였는데, 표절 분량 및 범위가 상당한 점, 출판 후 국립중앙도서관 납본 및 시중 서점 배포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A는 위 도서를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출판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들이 저작권자 H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는 타인의 저작물을 표절한 도서의 집필 및 출판을 주도하였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후배인 피고인 B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더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B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 침해 중단 요구에 따라 표절 도서는 대부분 판매중지 및 회수 처리되었다. 명의를 도용당한 Q, R은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신영 _____